경기도공고 제 2019-540호

공 시 송 달

성　　명 : ㈜프라임비즈니스유닛 등 **2,428명**(법인, 대표자 및 개인)

주소 또는 거소 : 붙임 "공시송달 대상자 명단"과 같음

서 류 의　명 칭 : 고액상습체납자(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) 명단공개 사전안내문

서 류 의　내 용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**시행령 제19조**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.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**2019년 10월 8일까지**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소명기한내에 체납액의 30%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※ 소명기한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위의 서류를 **2019년 3월 6일**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**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**에 따라 공고합니다.

붙임　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

2019 년　3 월　25 일

경 기 도 지 사

문의처 : 경기도 조세정의과(031-8008-2382) 및 각 시·군 세무(세정,징수)부서